

의안번호	제 128 호
의결년월일	1996. 12. 14.
의결사항	원안가결

발의자	김인수 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6. 12. 10.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 신 : 의 장

제 목 :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
의규정에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전 1 부 끝.

발 의 자 : 김 민 수 (인)

(찬 성 의 원 서 명 : 붙 임 참 조)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 개정 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1995. 7. 1 대통령 제14703호)으로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제 1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 용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개정하고자함.

☐ 주요 골자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 관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내지 제2호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정의)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 4 조(보상금지급 기준)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의) 생략	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일비</u> ”라 함은 영 제 15 조 규정에 의한 <u>일비</u> 를 말한다	2. “ <u>회의수당</u> ”이라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 을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 4 조(보상금지급 기준)①생략	제 4 조(보상금지급 기준)①현행과 같음.
1. ----- ----- <u>일비</u> -----	1. ----- ----- <u>회의수당</u> -----
2. ----- <u>일비</u> -----	2. ----- <u>회의수당</u> -----

地 方 自 治 法	地 方 自 治 法 施 行 令
第 5 章 地方議會 第 1 節 組 織 第 26 條 (議會의 設置)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第26條의2(地方議會議員의 選舉)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本條新設 94. 3. 16] 第 27 條 내지 第 30 條 削除<89. 12. 30> 第 2 節 地方議會議員 第 31 條 (議員의 任期)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 내지 ④ 削除<94. 12. 30> 第 32 條 (議員의 議政活動費등) ①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1. 議政資料의 蒐集·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 蒐集·研究를 위한 補助活動의 費用은 市·道議會議員에 한한다.	제 3 장 지방의회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개정 95. 12. 30>

地 方 自 治 法	地 方 自 治 法 施 行 令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 3. 會期中에 지급하는 會議手當 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全文改正 94. 3. 16] 第32條의2(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4. 3.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95. 7.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95. 12. 30] 제15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손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 7. 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손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의 안 찬 성 의 원 서 명

성명	서명	(인)
백영우	壽	
홍은상	亨	
朴洪植		

